

『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곤 의원 외 4명

2. 제안이유

-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규정·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며, 유사·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추진의 능률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에 근거 없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삭제(안 제18조)
 -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지원(법령위반 소지)
- 유사·중복된 환경관련 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(안 제20조)
 - 녹색성장위원회, 화학물질 안전관리 → 환경정책위원회
-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22조 ~ 제25조)
 -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기능 추가
 - 위원의 해촉,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「지방재정법」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